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이유

- 모바일운전면허증 등 디지털 신원증명수단 도입에 따라 신원확인
신분증 사본 보관 업무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모바일운전면허증 등과 같이 신분증명서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
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등 사본화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업무담당자가
신분확인 후 신분확인서를 작성 및 편철하여 보관하도록 함(안 제6조
제3항단서 신설)
- 사본화가 적합하지 않은 신분증명서의 사본화를 대체할 신분확인서
양식을 마련함(별지 제4호 신설)

3.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분증명서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등 사본화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양식의 신분확인서를 해당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 편철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의 양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분확인서

1. 확인일시:

2. 본인확인정보: 모바일운전면허증, 주민등록확인서비스, 기타()

3. 성 명:

4. 주민등록번호:

5. 식별정보:

* 신분증명서의 진위 확인을 위하여 반드시 아래의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1. 모바일운전면허증: 운전면허번호(예: 11-23-012345-67), 식별번호(예: 1234AB)
2. 주민등록확인서비스: 발급일자, 발급기관

신분증명서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등 사본화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주민등록법 제25조의 주민등록확인서비스, 도로교통법 제85조 및 동 시행규칙 제77조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에 해당하므로 신분증명서의 사본에 갈음하여 이 신분확인서를 작성함

20 년 월 일

지방법원

지원
등기관

등기(과)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 (전자증명서 발급 청구의 심사) ①·② (생 략) ③ 등기관은 제1항의 신분증명 서 사본 또는 제2항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을 전자증 명서발급신청서에 편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6조 (전자증명서 발급 청구의 심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u>다만 신분증명서가 이동통 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등 사본화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양식 의 신분확인서를 해당 전자증명 서발급신청서에 편철하여야 한 다.</u> ④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의안 소관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연락처	(02) 3480-1878